

#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송재혁 의원 외 36명
- 나. 의안번호: 제2544호
- 다. 발의일자: 2021. 8. 7.
- 라. 회부일자: 2021. 8. 18.

### 2. 제 안 사 유

- 현행 조례는 시장이 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당연직 위원 중 하나를 ‘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’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린뉴딜의 위상의 맞는 직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근거 조를 수정함(안 제5조).
- 나. 위원회의 위원 중 하나를 기존 ‘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’에서 ‘시 그린뉴딜 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’으로 변경함(안 제9조제3항제2호).

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

나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(이하 “그린뉴딜위원회”)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‘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’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린뉴딜의 위상의 맞는 직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그린뉴딜위원회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그린뉴딜 관련 시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〈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의 근거, 목적 및 구성 현황〉

---

- 근거: 「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」 제8조
  - 목적: 그린뉴딜 시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
    - 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   - 그린뉴딜추진계획의 지원, 관련 조례 및 제도에 관한 사항
    -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, 교육·홍보,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
  - 구성: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
    - 시의원, 관련 부서의 장, 그린뉴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

- 안 제9조제3항제2호와 같이 그린뉴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기존의 ‘관련 부서의 장’에서 ‘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’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또한, 에너지정책위원회, 택시정책위원회, 청계천시민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서울시의 주요 위원회들도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‘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’으로 규정하고 있고 ‘그린뉴딜’의 위상이 그 어떤 정책들에 못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공감하는 바임.

〈서울시 주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현황〉

연번	위원회명	조례명	조항 및 내용
1	에너지정책위원회	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	제10조제2항제1호 · 기후환경본부장,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·본부·국장
2	택시정책위원회	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	제14조제1항제3호 ·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, 국장
3	청계천시민위원회	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	제12조제4항제1호 · 청계천 업무 관련 실·국·본부장
4	적극행정위원회	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	제9조제3항3호 ·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3급 이상의 실·본부·국장급 공무원
5	서울민주주의위원회	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	제9조제4항제3호 · 예산, 협치, 혁신 등 소관 실·본부·국장 또는 기획관
6	청년정책조정위원회	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	제9조제4항 · 당연직 위원은 혁신·경제·주택·복지·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